

SM "동방신기에 현금만 110억원 지급, 고급 외제차 제공"

입력 2009. 8. 3. 23:35 · 수정 2009. 8. 3. 23:41



"동방신기에 데뷔 이후 현금만 110억원 지급했다."

SM 엔터테인먼트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동방신기 멤버 3명(시아준수, 영웅재중, 믹키유천)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.

SM은 먼저 수익배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"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(기본배금 92억+선지급금 17억 7000만원)을 수령했고 고급 외제차(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) 등을 제공받은 반면,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"고 반박했다.

또한 무리한 스케줄로 하루 3~4시간 수면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"건강 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해 왔다"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.

SM은 이어 "화장품 사업은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"라며 세 멤버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. SM은 "화장품 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"이라며 "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파악됐고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조치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◆ 다음은 반박 보도자료 전문

1. 음반 50만장 이하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 없음

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(기본배금 92억+선 지급금 17억 7천)을 수령하고 고급 외제차(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) 등을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 적자 기록했음.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, CF, 이벤트,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(부정확하게) 부각했음.

2. 하루 3, 4시간 수면 등으로 건강 악화

건강 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해왔음.

3. 화장품 사업이 본 사건의 본질이 아님

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임. 화장품 사업에 참여한 세 멤버 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임.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조치할 예정임.

4. 종신 계약, 손해배상의 과도

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 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 두고 있음.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갱신,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음.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,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뤄졌음.

5. 부당한 계약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요청함

신청인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2009년 6월 첫 내용증명 통고서부터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음.

6. 법적 조치 행사

법무법인 선정해 소송 대응 및 멤버 3명과 조속히 해결할 것임.

[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@mk.co.kr]

[©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
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'65+NATE/MagicN/Ez-I 버튼'

매일경제 & mk.co.kr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